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12.9.(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1. 25

나. 제 안 자 : 김성준 의원 외 16인 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19. 11. 25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10차 위원회(2019년12월9일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김성준 의원

○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을 확대·구체화하고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, 관할 지방병무청의 개청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우대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함.(안 제2조)

○ 인천병무지청 개청에 따른 관할 지방병무청 명칭 변경(안 제3조)

○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구체적 항목 명시(안 제4조)

○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우대 적용대상을 병역명문가의 가족까지 확대(안 제5조)

○ 관계기관 협조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을 신설함.(안 제7조,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○ **예우대상자 가족 신설(안 제2조제3호)**

-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(병무청 훈령 제1564호)」 제2조(정의)제3호[1]에 따라 “병역명문가 가족”을 준용하여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을 신설하는 사항이나, 현행 조례 제2조(정의)에 “병역명문가”와 “예우대상자”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, 병무청 훈령 제18조제1항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에 3대의 이름을 명기하는바,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“예우대상자”는 이 중 우리시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, 병무청 훈령 제2조(정의)제3호의 “병역명문가 가족”에는 “모, 배우자, 자녀”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에는 “부”가 포함되어 있는바 병무청 훈령과 상충되므로 검토가 필요함.

---

1) “병역명문가 가족”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○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항목 규정(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는 “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안 제4조제2항에 병역명문가 예우관련 구체적 항목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은 지난 2017년 3월 24일 인천병무지청과 인천문화예술회관 상호간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, 협약 내용에는 공연 관람료의 차별화된 할인가로 할인 및 엔티켓 예매 수수료 면제 등으로 되어 있는바, 관람권 등 지급에 대한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***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우대 실시**

◇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지원계획(비상대책과-5123호, 2015. 5.13.)
☞ 인천광역시 관리 공공시설물 이용료 · 사용료 감면 · 할인
(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)
☞ 현충일, 6.25.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귀빈 초청

◇ **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%감면**
(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바목)

◇ **체육시설 이용료 30% 감면**
(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의2제2항제1호)

-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예우에 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,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.

○ **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(면제) 혜택 확대(안 제5조)**

- 시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
○ **협조요청,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 신설(안 제6조~제7조)**

- 안 제6조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와 관련하여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청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나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제1항[2]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, 조례로 명문화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며,
- 안 제7조에서는 시에서 설치·관리·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안 제5조 제1항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□ **종합검토의견**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병역면탈 및 기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, 예우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예우에 대한 내용을 확대·보강함으로써,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자랑스러운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, 일부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---

2) 전자정부법 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병역명문가의 의미는?

⇒(김성준 의원) 3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한 가문을 말하는 것임.

○ 병역명문가 홍보가 필요한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병역의 의무를 완수한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에 명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함.

○ 조례에 있는 조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, 홍보하고,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.

⇒(시민안전본부장) 네. 알겠음.

○ 현재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받고 있음.

○ 병역명문가에 대한 패를 만들어 주는지?

⇒(시민안전본부장) 가능함. 보훈청에서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만들어 주고 있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일부조문 변경 필요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◇ 안 제2조제3호 중 “부모”를 “모”로 하고,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”을 “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”으로 하며,

◇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,

◇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,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❑ 붙임 1. 수정안 1부.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3.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4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3호 중 “부모”를 “모”로 하고,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”을 “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”으로 하며,
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의거 필요한 자료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를 삭제하고,
안 제7조를 안 제6조로, 안 제8조를 안 제7조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예우와 지원------- ---------- -.	제1조(목적) (개정안과 같음)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 ---------- ----.	제2조(정의) (개정안과 같음)
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(이하 "병무청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.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병무청장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	1. (개정안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	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	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인천	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인천·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병무지청장----------.	
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(생략)	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.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.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·격려 4.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 5.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(개정안과 같음) 2.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. ~ 6.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.	③ (개정안과 같음)
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	제5조(우대) ①-----------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----------	제5조(우대) ①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.	
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제6조(협조요청)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7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시에서 설치·관리·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(개정안 제7조와 같음)
제6조 (생 략)	제8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	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예우”를 “예우와 지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각 지방병무청장(이하 “병무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병무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인천·경기지방병무청장”을 “인천병무지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
2.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
3.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·격려
4.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
5.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”를 “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시에서 설치·관리·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예우와 지원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병역명문가"란 3대(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서 각 지방병무청장(이하 "병무청장"이라 한다)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. 2. (생 략) <신 설>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---------- 병무청장-----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“예우대상자 가족”이란 예우대상자의 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	제3조(병역명문가 지원)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하기 위하여 인천·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-------- 인천병무지청장---------- ----------.
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(생 략)	제4조(홍보 및 예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.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 3.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·격려 4.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른 포상 5.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.
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병역명문	제5조(우대) ①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	--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<신 설>	제6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장은 시에서 설치·관리·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6조 (생 략)	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